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자 : 임영은 의원 등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년 10월 31일
-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일

3. 제정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범위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은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 함 (안 제3조)
- 충청북도 기록물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기록물 관리 원칙 명시 (안 제4조)
- 충청북도지사는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 주요 업무를 정함 (안 제5조~제6조)
- 충청북도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등을 정함(안 제7조)

5. 검토의견

금번 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공공기관의 범위를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 하고,

둘째, 충청북도 기록물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기록물 관리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셋째, 기록관의 설치·운영 의무와 기록관의 주요 업무를 정하였으며,

넷째, 충청북도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본 제정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기존 규칙에 규정된 충청북도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